



#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

(2020.1.16. 시행일 기준)

순번	산업안전보건법	주요내용	벌칙
1	제16조[관리감독자]	▷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작업복,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, 착용 교육/작업의 지휘 감독,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	500만원이하 과태료
2	제17조[안전관리자] 제18조[보건관리자] 제19조[안전관리담당자]	▷ 상시근로자의 인원과 건설공사의 규모 별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선임 또는 대행기관에 위탁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지도, 조인 업무수행	500만원이하 과태료
3	제29조[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]	▷ 정기교육 : 비사무직(6시간/분기), 사무직(3시간/분기) ▷ 채용시교육 : 건설업일용직(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), 정규채용 8시간, 일용직 : 1시간 ▷ 특별안전보건교육 : 건설업(2시간), 건설업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(8시간), 건설업외(16시간) ▷ 관리감독자교육 : 전 업종 대상자(부서장, 작업반장등) 16시간/연간	5,000만원이하의 과태료 (횡성/인원에 따른 차등부과)
4	제34조[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]	▷ 본 법령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게시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함	500만원이하 과태료
5	제36조[위험성평가의 실시]	▷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평가하고 이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함(해당 작업장의 근로자 참여 필수)	1,000만원이하 과태료
6	제37조[안전보건표지의 설치, 부착]	▷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, 사설,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 등 안전 및 보건요식 고취를 위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(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별표 7,8,9 기준) - 금지표지(출입금지, 사용금지 등)/경고표지(인화성, 산화성, 독성 물질 등)	500만원이하 과태료
7	제38조[안전조치]	▷ 기계/폭발성물질/전기 및 굴착/하역/중량물 취급 및 추락/토사붕괴/낙하물 등의 위험으로 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(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기준)	근로자 사망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8	제39조[보건조치]	▷ 증기/흙/미스트 및 방사선/소음진동 및 정밀공작/단순반복 및 환기/재광/조명. 보온 등 작업장과 근로자 근무조건 등의 환경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(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기준)	
9	제57조[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]	▷ 산재발생시 은폐해서는 안되며 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함 - 사망시 : 지체없이 관할 노동지청에 전화/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고 - 부상시 : 3일 이상 휴무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보고	· 은폐 :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· 미보고 :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10	제63조[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]	▷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모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 (보호구 착용 등 직접적 지시제외)	· 근로자 사망시 :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· 위반시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의 벌금
11	제64조[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]	▷ 안전보건협의회(1회/월), 건설업 및 제조업 순회점검(1회/2일) 합동점검(1회/2개월)위생시설 설치 협조, 안전 및 보건 정보제공 등	500만원이하 벌금
12	제80조[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]	▷ 프레스, 전단기, 크레인, 리프트, 압력용기, 롤러기, 사출성형기, 고소작업대, 곤돌라 및 프레스 및 전단기, 양중기 과부하방지장치, 안전밸브, 파열판, 방폭구 조제품 의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성능의 안전성을 위하여 안전인증기준을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해야함	1년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
13	제84조[안전인증]	▷ 프레스, 전단기, 크레인, 리프트, 압력용기, 롤러기, 사출성형기, 고소작업대, 곤돌라 및 프레스 및 전단기, 양중기 과부하방지장치, 안전밸브, 파열판, 방폭구 조제품 의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성능의 안전성을 위하여 안전인증기준을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해야함	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의 벌금
14	제93조[안전검사]	▷ 크레인(2톤 이상), 리프트, 곤돌라, 압력용기, 프레스, 전단기, 국소배기장치(49종 50%초과)원심기, 화학설비와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, 롤러기, 사출성형기, 고소작업대, 컨베이어, 산업용로봇 등 2년마다 안전검사 실시	1,000만원이하 과태료
15	제114조[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]	▷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, 수입, 운반, 저장시 MSDS 게시 또는 비치 ▷ 화학물질 등을 함유한 용기/표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 교육 실시	500만원 이하 과태료
16	제118조[유해, 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]	▷ a-나프틸아민, 디아니시딘, 디클로로벤지딘 및 그 염, 베릴륨, 벤조트리클로라이드,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, 염화비닐, 클타르피치 휘발물 등 (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제88조)	5년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
17	제119조[석면조사] 제122조[석면해체, 제거]	▷ 건축물 등 철거시 지정된 기관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작업기준을 준수해야함. ▷ 일정 면적이상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하여 해체해야 함.	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
18	제125조[작업환경측정]	▷ 소음(80dB 이상), 화학물질, 분진, 고열 등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실시 - 연(年) 1회 이상 6개월 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기준)	1,000만원 이하의과태료
19	제129조[일반건강진단] 제130조[특수건강진단등]	▷ 일반건강진단 : 사무직 1회/2년, 비사무직 1회/1년 ▷ 특수건강진단 : 소음, 화학물질, 분진 등 노출 근로자(1회/반기~2년) ▷ 배치전건강진단 :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채용, 작업전환시 작업전 실시	5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20	제164조[서류의 보존]	▷ 산업재해 발생기록, 관리책임자, 안전 및 보건관리자, 관리감독자 등 선임에 관한 서류, 석면조사, 작업환경측정, 건강진단 등에 관한서류 (3~30년 보관)	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\* 법위반에 따른 각종 벌칙규정은 동법 제167조~175조 참조